

(재)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-44호

「2026년 한글로(路) 조치원」 공간 운영 기업 모집공고

세종시×SBS <우리 동네 전성시대>에서는 한글문화가 창작·소비되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「한글로(路) 조치원」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한글문화 거점 공간을 운영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5월 14일

(재)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

1

사업개요

- (공 모 명) 「한글로(路) 조치원」 공간 운영 기업 모집
- (운영기간) 선정일 ~ 3년간 ※최대 5년까지 계약 가능하며 만료 후 연장은 추후 협의
- (운영내용) '한글'을 주제로 한 카페·베이커리 운영 및 한글 굿즈 상품 판매 등 콘텐츠 연계 공간 운영
- (지원대상) 사업대상지인 '세종특별자치시'에서 F&B 사업(카페, 베이커리)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
- (모집분야) 베이커리 메뉴 제조 및 카페 운영 가능자
- (선발규모) 총 1개사

□ (운영공간)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, 조치원역 1층 공실(57.56㎡)
및 인근 외부 일부(47㎡)

○ (임대료) 연 24,337천원(57.56㎡), 연 7,382천원(47㎡) ※면적당 추산 금액



사업 대상지

□ (지원내용) 운영 공간 조성* 및 공간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

운영 공간 조성	⊕	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
사업 운영 공간 디자인 및 인테리어 공간 구성에 따른 기자재 일체 지원 등		사업지 대상 조성 과정 및 홍보 과정 프로그램 제작 비용 지원

* 사업 콘셉트와 공간 디자인의 본질적 사항은 사전 협의 없이 변경 불가

□ 지원절차

모집·신청	⇒	서류·현장평가	⇒	공간 조성 및 홍보 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대상자 모집 * 신청: 5.14.(목) ~ 6.12.(금) 11:00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26.5.14.(목)~6.12.(금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서류·현장평가를 통한 사업 대상기업 선발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월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공간 인테리어 ■ 홍보 프로그램 제작 목적 촬영, 컨설팅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월~8월</p>

2

세부 지원내용

□ 운영 공간 조성

- 한글을 주제로 한 F&B 매장 운영을 위해 운영 대상지의 콘셉트에 부합하는 공간 디자인 및 인테리어 지원(공사 후 1년간 하자보수 지원 예정)
- 공간 조성을 위해 활용된 가구 및 시설물 등 기자재 일체 지원
※ 단, 소모품은 초도물량만 제공하며 이후 추가 구매는 선정기업 부담
- 사업지 개소 후 안정적인 매출 창출 및 홍보를 위한 공간 기반 팝업스토어 개최 일부 지원
-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, 운영 공간 조성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및 제반 운영비용은 선정기업 부담
- 해당 공간에서 발생한 이익은 매출액(순이익)의 일정 비율로 지역 문화진흥기금*으로 적립하며, 적립 비율은 개소 후 1개월간 운영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1~3% 범위 내 협의를 통해 결정

*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됨.

□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

- (기업 선정) 공정한 선발을 위해 서류접수 기업 대상 현장평가 과정을 촬영하고, 이를 기반으로 최종 운영 기업을 선정
 - (공간 조성) 공간의 인테리어 전·후 과정을 촬영하여 공간 홍보 및 사전 기대감 조성을 통한 소비자 유입으로 매출 성장에 기여
 - (운영 지원) 사업 대상지에서 판매할 메뉴를 위한 전문가 개발 레시피 교육 지원 후 사업 대상지 내 메뉴 운영 권한 제공
- ※ 단,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메뉴를 사업 대상지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음

3

신청 및 접수

□ (신청기간) 2026. 5. 14.(목) ~ 2026. 6. 12.(금) 11:00

※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수 건이 급증하여,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, 가급적 마감일 2~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

□ (신청방법) e-mail 접수 / ydd23@ccei.kr

□ (제출서류) 작성 서류는 [서식]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hwp 파일로 첨부 하며, 나머지 발급 서류는 스캔본 첨부

NO.	제출서류명	비고
1	사업신청서	매장, 메뉴 등 소개 자료 첨부 요망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방송 촬영 동의(초상권) 포함
3	사업자등록증	
4	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('23년~'25년)*	해당 시
5	국세 납세증명서	
6	지방세 납세증명서	

* 업력 3년 미만 시 개업한 해부터 '25년까지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제출

□ (신청자격)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

- '세종특별자치시' 내 사업자 주소지*를 두고 F&B 사업(카페, 베이커리)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
- *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종시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 및 계약 종료까지 유지할 경우, 신청 가능
-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메뉴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거나 메뉴 개발 및 제조·판매(운영)가 가능하며,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레시피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·협조가 가능한 자
- 공간 계약 후 3년 이상 운영 유지가 가능한 자

※ 단, 계약기간 중 임의 포기 또는 중도 퇴거 시, 코레일 내부규정에 따라 시설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신청 제외대상	<p>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* 지원제외 대상 업종 [참고1] 확인</p> <p>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*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·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선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,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** 단,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</p> <p>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* 단,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,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(지원) 가능</p> <p>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(기업)</p> <p>⑥ 신청일 현재 '기업의 부도, 휴·폐업' 중인 자(기업)</p> <p>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 *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 등) 및 기업의 대표자, 과제 책임자,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</p> <p>⑧ 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, 단체 또는 조합</p> <p>⑨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</p>
------------	---

4

평가 및 선정

□ (평가절차) 총 2단계 평가(서류 → 현장)를 통해 최종선정

① 서류 평가		② 대면 평가		③ 최종 선정
서류평가(100)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규모의 3배수 선발	▶	사업장 방문 또는 발표 및 제품 실물 심사	▶	'현장평가(100점)' 최고 득점자 선정 (단, 60점 미만 제외)

* 신청자격(업종, 사업자등록상태, 국세·지방세 체납 등) 요건검토는 서류접수일로부터 최종 선정시까지 상시 진행하며,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

□ 평가 방법

○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(가점 반영)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자(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) 선정

-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%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

- 서류평가 지원자가 선정규모의 3배수 미만일 경우, 요건 검토를 거쳐 별도의 서류평가 없이 대면평가 진행

※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,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○ (대면평가) 대상자의 사업장 방문 또는 발표 및 제품 심사로 사업성 및 지속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선정자 결정

* 대면평가(양식, 지표, 장소 등)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,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,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< 평가지표 >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메뉴 적합성 (60)	• '세종 특산물', '한글'을 활용한 메뉴의 창의성	20점
	•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맛-플레이팅 완성도	20점
	• 재료 구성의 적정성 및 원가 등을 고려한 메뉴의 상품성	20점
사업 역량 및 지속 가능성 (40)	• 사업성 및 시장성(타깃고객, 매출구조, 경쟁력 등)의 적정성	10점
	• 기존 매장 운영 경험, 대표자 및 팀원 전문 역량	15점
	• 장기 운영 계획 및 브랜드 확장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	15점

□ 최종선정

-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최종선정은 대면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- 최종 선정 이후 공간 계약 주체(한국철도공사)에서 요구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자산 심사 절차 진행 예정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5

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
- 동 사업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신청자와 사업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,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·표절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문화체육관광부, 세종특별자치시의 행·재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6

문의처

□ 사업문의

- (메일) ydd23@ccei.kr
- (유선) 044-999-0238

참고1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('25년)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」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※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※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